KAIRB Issue Letter

No.3

발행처: (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발행인: 정종우
편집위원회: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 위원장/간사: 배균섭(서울아산병원)/유소영(서울아산병원)
- 정책위원회 위원: 구영모(서울아산병원), 김성환(성빈센트병원), 노양희(세브란스병원),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동인(서울대학교병원), 신임희(대구가톨릭대의료원) (가나다 순)

본 Letter는 최근 임상연구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KAIRB 회원사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의 일선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Letter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kairb@kairb.org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보판 <표준회의 진행법 교본>에 대하여

KAIRB 정책이사 배균섭(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전 세계에서 회의규칙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권위가 있는 것은 <Robert's Rules of Order> (이하 RR)이다. 현재 12판까지 나와 있고, 한국회의법학회에서 2001년 RR 9판을 완역하였으나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 아직까지 다른 한글 완역판은 없다. 하지만, 한국회의법학회에서 2018년 <표준 회의진행법 교본>을 출간하였으며, 2021년 1월 증보판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에 올해 새로 나온 <표준 회의진행법 교본>(이하 교본)의 내용중 KAIRB 회원에게도 참고가 될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한다.

먼저 KAIRB는 대한민국 IRB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IRB들의 협의체로서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가급적 KAIRB의 총회, 이사회, 개별 IRB 회의(소규모 상설위원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을 언급한다.

총회, 이사회, 위원회의 회의 규칙 전반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이번 회에서는 몇몇 눈에 띄는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총회는 회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회의하는 것으로 (이사회보다 높은) 가장 상위 의사결정기구이다. 반면 이사회는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운영조직이다. 위원회는 대개 12인이하 (또는 약간 상회하는)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3가지 형태의 회의체는 회의방법이 유사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존재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종류	총회	이사회	위원회
구성원	모든 회원 (수가 너무 많아서 회의가 어려운 경우 대의원 회의를 연다.)	이사진 (감사는 참석하여 관찰한다.)	위원 (어떤 경우는 회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
업무 권한	가장 상위권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 총회의 권한 보다 낮다.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
규모	중 ~ 대규모	중 ~ 소규모	대개 소규모
개최빈도	연간 1 ~ 2회	연간 수 회	필요시 마다 열리므로 1주에 여러 회 열릴 수도 있다.
의장의 투표권	대의원 회의에서 회장이나 이사장이 의장을 맡는 경우에 투표권이 없다. 대부분의 회의규칙은 총회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감사는 투표권은 없지만, 참관은 한다.	의장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심지어 가부 동수일 때 가부결정권을 주기도 한다. IRB에서는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투표권이 같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1. 회의는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300이상), 중규모(13~299), 소규모(12이하)로 나눈다(교본 p36).

2. 총회의 유형은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로 나누는데, KAIRB는 회원총회만 있고, 대의원총회는 없다. 구성원이 수 만명이나 되는 규모가 큰 단체는 각 지역이나 직역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장, 위원장 등 집행기관의 조직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의결권)이 없다. 이는 업무분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인데, 정관에서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에 의해 무효이다(교본 p38). 재단법인에는 회원이 없으므로 총회가 없다(교본 p61).

3. 총회에서는 서면투표나 대리인투표가 가능하나, 이사회나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서면투표나 대리인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시간 화상회의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충분의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능하므로 회의장에 출석한 것과 동등하다(교본 p194). 만약 불가피하게 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에 투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나 위원회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이유에는 이사나 위원들에게는 복임권(複任權)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회의체 성격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자체가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4.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고, 따라서, 감사에게도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여야 한다(교본 p67).

5. 총회, 이사회와는 달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다(교본 p73).

6. 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와 달리 의사진행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 (교본 p73). 또한, 위원장/의장 투표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여도 된다. 총회에서는 의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 (교본 p179, p196).

7. 공적단체의 총회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나, 이사회, 위원회는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교본 p85). 공적단체란 공법(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교본 p19). 따라서, KAIRB, 병원, 대학 등은 공적단체가 아니라, 민법, 공익법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적단체 중 비영리단체에 속한다. KAIRB의 회원 중에는 IRB가 설치되어 있다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단체도 될 수 있다. KAIRB의 홈페이지에는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자연인들도 있으나, 개별 IRB들과 동등하게 회원의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8. 일반회의의 3대 기본원칙은 (1) 토론자유의 원칙 (2) 회원평등의 원칙 (3) 다수결의 원칙이며, 다수결에서 과반여부를 결정할 때 분모는 유효투표가 아니라, 재석위원수(즉, 기권이나 무효투표를 모두 포함)이다. 정관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으로 정하였더라도 법에 의해 무효이다(교본 p94).

9. 총회 의안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과반출석, 과반찬성이다 (즉,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다). 경우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높일 수는 있으나, 낮출 수는 없다(교본 p121). 반면, 이사회나 위원회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 처리규정을 두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10. IRB에서 안건이라 지칭하는 것을 일반회의체에서는 주로 기본주동의(基本主動議, original main motion)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동의의 개념을 알아야 하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교본 p215).

11. 이사회, 위원회가 소회의인 경우에, (총회와 달리) 보조동의의 성립요건 완화(안건 성립에 재청 불필요), 토론횟수제한/시간제한 완화 등의 차이가 있다 (교본 p194). 또한 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교본 p194).

도표 10-1 **Robert's Rules of Order (RR)이 들고 있는 동의들과 표준총회규칙이 들고 있는 동의들(교본 발췌)**

① 제1단계와 제2단계

RR	표준총회규칙
주동의(기본, 부수)	주동의(기본, 부수)
부동의(보조, 특권, 부수)	보조
재상정동의(보류해제, 기결의안 폐기 · 수정, 회부취소, 재심의)	(보류해제는 보류와 하나로, 회부취소는 회부와 하나로 묶음, 기결의안 폐기 · 수정과 재심의는 부수주동의임)

② 제2단계와 제3단계(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총회규칙의 해당 조문임)

RR		표준총회규칙
보조 동의	무기한 연기	제외함(상급설명 참조)
	수정	수정(27)
	회부	회부(28)
	기한부 연기	연기(29)
	토론제한 연장	토론종결(30)
	즉시토론종결	토론종결(30)
	보류	제외함(상급설명 참조)
특권 동의	일정촉진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특청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정희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폐회(회기단축)	부수주동의임
	속회(회기연장)	부수주동의임(14)
부수 동의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항의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규칙일시정지	제외함(상급설명 참조)
	심의 반대	제외함(상급설명 참조)
	의안분할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축조심의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재표결	의사진행발언 중 하나임(34)

(위에서 단계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류 단계를 의미한다)

12. 지난 회의에서의 의사록 낭독은 의사록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회의록에 대한 승인 또는 통과 절차는 의례적인 것으로, 승인/통과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본 p201).

13. 교본에는 투표순서에 대해 IRB 회의의 경우를 예로 하고 있지 않지만, p225, p226의 소수의견 배려원칙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투표방법이 거수이면서, 결정안이 여럿일 때(IRB의 경우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중지 또는 보류 등이 있다.) 찬성표가 가장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부터 거수하는 것이 좋다. 이는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수 의견을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의사표시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수가 나왔더라도 다른 의견이 몇 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과반 의견이 이미 나왔다고, 다른 의견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4. IRB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회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을 요한다 (교본 p244).

    이상 최근 한국회의법학회서 발간한 <표준 회의진행법 교본>(법률신문사 2021)을 일독하고서, 몇몇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더 개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는 이후 letter에서 다루고자 한다.